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
----------	------

발의연월일 : 2016. 8. 3.

발의자 : 송기석 · 이동섭 · 김동철

김경진 · 이언주 · 장병완

박주선 · 전혜숙 · 최경환^국

김한정 · 신용현 · 이용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장애인’은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의2 신설 등).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의3. 아동·청소년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의4. 지역 간 독서 문화의 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i)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 <u>독서장애인</u> ”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독서소외인</u> ”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생 략)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u>독서장애인</u> , 소외지역, 소외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u>독서소외인</u> 의 독서 환경 개

<p><u>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u></p> <p><u><신 설></u></p> <p><u><신 설></u></p> <p>4. ~ 7. (생 략) ③ · ④ (생 략)</p> <p><u><신 설></u></p>	<p><u>선에 관한 사항</u></p> <p><u>3의2.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p> <p><u>3의3. 아동·청소년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p> <p><u>3의4. 지역 간 독서 문화의 격차해소에 관한 사항</u></p> <p>4.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u></p>
---	---